

HYBE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회사')의 윤리헌장에 기초하여 회사와 구성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④ 본 윤리강령은 회사와 자회사, 계열회사, 합작투자사 등을 포함하여, 그 회사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⑤ 본 윤리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각 회사와 그 소속 구성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2 장 회사의 약속

제 3 조 (인권 존중)

회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지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공정한 평가와 보상)

회사는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을 평가하고 보상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 (기회 제공)

회사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계발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제안 및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율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 6 조 (일과 삶의 조화 및 근무환경 관리)

- ① 회사는 구성원이 일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고 그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이 업무를 통해 금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구성원이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간에 사생활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안전 및 보건)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재난·재해·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담합 행위)

회사와 구성원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사업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부정경쟁방지)

회사와 구성원은 경쟁업체나 파트너사의 정보,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적법·정당하게 취득·이용·관리하고, 타인의 권익을 부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제 10 조 (뇌물 및 청탁금지)

회사와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뇌물 또는 부정청탁을 수수하거나, 공여 또는 공여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나아가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여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국내외의 공직자 등과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제 11 조 (윤리경영 동참 요구)

회사와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환경오염 유발, 노동 착취, 인권 유린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아티스트 및 연습생 존중)

- ① 회사는 구성원과 더불어 아티스트와 연습생을 인격체이자 파트너로 존중하며 소통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미성년자인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팬 존중)

회사와 구성원은 팬을 아티스트와 회사에 대한 고객으로서 존중하며 소통해야 한다.

제 3 장 구성원의 다짐

제 14 조 (구성원의 기본자세)

- ① 구성원은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조직구성원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구성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 하고, 행동해야 한다.
- ③ 구성원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제 15 조 (법규 준수)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법규 또는 사규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6 조 (회사 자산의 보호)

구성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특히 회사의 자산 등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지 않는다.

제 17 조 (정보보호)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기밀·지식·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제 18 조 (미공개 내부정보 보호)

구성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 관련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가증권, 채권, 기타 자산을 거래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제 19 조 (공정 거래 추구)

구성원은 회사,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20 조 (대외 활동)

구성원은 회사의 사전 보고 및 승인 없이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출판·강의·대외매체 등을 통한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1 조 (자료 공유 및 보고)

- ①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자료는 회사의 중요 자산임을 인식하고, 유관부서에 투명하게 공유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권한을 통제하여 관리한다.
- ② 업무 관련 중요 사항 또는 자료는 상위 직책자에게 적시에 보고하며, 허위로 보고하지 않는다.

제 22 조 (기록과 보존)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록, 자료 및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및 보존하며, 임의로 유출·조작·은닉·훼손·폐기하지 않는다.

제 23 조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구성원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신체조건, 장애, 외모,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 신분, 학력, 이념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 24 조 (구성원 상호 존중)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근무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배려해야 하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5 조 (정당한 직무 수행)

- ① 구성원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구성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제 26 조 (사적 금전대차 행위)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차입 또는 보증 등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27 조 (이해상충행위)

구성원은 고객 및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영리활동)를 겸직하지 않는다. 만약 회사와 개인 간 이해상충 가능성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 및 유관부서(피플실, 컴플라이언스실)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제 4 장 공동의 노력

제 28 조 (주주 및 투자자 권익 보호)

회사와 구성원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주주친화 경영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 29 조 (환경친화 경영)

회사와 구성원은 자원 절약, 친환경 기술 및 제품 사용 등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제 30 조 (사회적 책임)

- ① 회사와 구성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장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모범적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과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 지원과 참여를 보장한다.
- ③ 회사는 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한다.

제 31 조 (제품 안전과 품질 관리)

회사와 구성원은 각종 제품 생산 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조 과정에서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2 조 (자금세탁방지)

회사와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에 관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3 조 (납세 의무 이행)

회사와 구성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제 34 조 (정치적 중립)

- ① 회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구성원 개인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 ② 구성원은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사의 인력 및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윤리강령의 준수

제 35 조 (관련 교육의 실시)

회사는 구성원이 회사의 윤리강령이 추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6 조 (위반행위의 보고)

구성원은 법규 또는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상위 직책자 및 내부통제부서(컴플라이언스실)에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내부고발자 보호)

회사는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구성원이 그 신고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38 조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자, 비윤리 행위자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9 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회사 또는 구성원이 본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유관부서(하이브 컴플라이언스실)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컴플라이언스실은 당해 금품 등을 회사의 이름으로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기부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0 조 (규정의 개폐)

본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윤리강령은 2025 년 04 월 30 일부로 시행한다.